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점		
	-3	0	+3
1. 수질등급	상수원수 I 등급	상수원수 II 등급	상수원수 III 등급
2. 취수량	1일 3천톤 미만	1일 3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일 1만톤 이상
3. 취수비율 (호소수의 경우)	0.1 미만 (0.01 미만)	0.1 이상 0.5 미만 (0.01 이상 0.02 미만)	0.5 이상 (0.02 이상)
4. 개발잠재력	없음	보통	있음

비 고

1. 수질등급의 판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항목 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 경관, 토지이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